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79호

#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

「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# 2023년 7월 11일

#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」

#### 2. 제정이유

○ 2022년 핼로윈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으나, 현행 법령은 주최·주관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·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.

○ 주최·주관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다중운집 행사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# 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3년 7월 17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 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l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(정순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328

발의연월일: 2023. 7. 10.

발 의 의 원:정순욱·김경희·김상현·박강우·백승규

심영석 · 오은옥 · 이우완 · 이원주 · 이천수

진형익ㆍ최은하 의원(12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2022년 핼로윈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으나, 현행 법령은 주최·주관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주최·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다중 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.

○ 주최·주관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대한 안전 을 확보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- 다. 다중운집 행사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##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다중운집 행사"란 주최·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.
  - 2. "안전관리"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창원시에서 열리는 다중운 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-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창원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 로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1,000명 이상이 모이고,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, 길거리 행진, 축제, 체육행사,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등 「재난 및 안전

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옥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한다.
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)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(이하 "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일시 · 장소 등 다중운집 행사 내용
  - 2.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과 행사 장소의 인원 수용 능력
  - 3.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
  - 4. 다중운집 행사의 접근 경로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
  - 5.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
  - 6.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
  - 7.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의 비상시 교통계획
  - 8.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 통제 계획
  - 9.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·운영을 위한 교통, 통신 등의 각종 조건 10.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

「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제7조(지원요청)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사고발생 시 대응)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「창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창원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참고

#### 관계 법령

#### 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 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)**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

실태를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■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

**제2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)**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- 1.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- 2. 안전관리계획 심의·해결
- 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- 4. 재난관리 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단체를 제외)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·조정
- 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- 6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